

2025. 1월 실시

대한체육회장선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

# 주요 선거운동 및 제한·금지사항 안내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 
NATIONAL ELECTION COMMISSION

# I

## 대한체육회장선거 개요 및 선거운동

### [개요]

- ▶ 선거일 : 2025. 1. 14.(화)
- ▶ 후보자 등록 : 2024. 12. 24.(화) ~ 12. 25.(수)
- ▶ 선거운동기간 : 2024. 12. 26.(목) ~ 2025. 1. 13.(월)
- ※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~ 선거일 전일까지 19일간 선거운동 가능

### [선거운동]

- ▶ 선거운동 가능자 :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등(선거사무장 1인, 선거사무원 4인)
- ▶ 선거운동 정의 :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
- ▶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
  -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  -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
  - 통상적인 업무행위
- ▶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

후보자	선거사무원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선거사무소 게시물의 설치 및 변경</li><li>· 전화(통화, 문자(그림말·음성·화상·동영상 등 포함))</li><li>· 정보통신망[체육회 개설 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보통신망(전자우편, SNS 등)]</li><li>· 선거공보, 윗옷 및 어깨띠, 명함</li><li>· 선거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1회 이상의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(단, 후보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2회 이상 정책토론회 실시 가능)</li><li>· 선거운영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(다만, 후보자 모두가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)</li><li>·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전화(통화, 문자(그림말·음성·화상·동영상 등 포함))</li><li>· 정보통신망[체육회 개설 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보통신망(전자우편, SNS 등)]</li><li>· 윗옷 및 어깨띠, 명함</li></ul>

-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」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, 선거운동 주체도 '후보자'와 '선거사무원등'으로 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,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'후보자'와 '선거사무원등'에 한하여 법과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.

# 대한(장애인)체육회장선거 기부행위 제한·금지

## 1 주체별 제한내용(법 §35)

※ (벌칙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주 체	제한기간	제한내용	비 고
<b>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</b> ※ '후보자'에는 '후보자가 되려는 사람'을 포함함. (이하 이 표에서 같음)	기부행위 제한기간 (24. 7. 31. ~ 선거일)	선거인[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(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대한체육회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대한체육회에 가입 신청을 한 자)를 포함. 이하 이 표에서 같음]이나 그 가족,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을 대상으로 금전·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※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- 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-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	§35①
<b>누구든지</b>	기부행위 제한기간 (24. 7. 31. ~ 선거일)	대한체육회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※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	§35②
		대한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	§35③
		위 규정된 행위(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에 관하여 지시·권유·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	§35④

## 2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(법 §33)

- ▶ 직무상의 행위 : 법 §33①1
- ▶ 의례적 행위 : 법 §33①2
- ▶ 구호·자선적 행위 : 법 §33①3

[「공직선거법」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·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]

# 대한(장애인)체육회장선거 위탁선거법상 기타 주요 제한·금지 행위

구 분	금지·제한 사항	비 고
<p><b>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상시 금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[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(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대한체육회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대한체육회에 가입 신청을 한 자)를 포함. 이하 이 표에서 같음]이나 그 가족,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금전·물품·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</li> <li>• 위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</li> <li>• 위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·권유·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</li> </ul> <p>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</p>	<p>§58</p>
<p><b>허위사실공표 금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당선목적)</b>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</li> <li>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</li> <li>• <b>(낙선목적)</b>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</li> <li>⇒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</li> </ul>	<p>§61</p>
<p><b>후보자 등 비방 금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</li> <li>⇒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</li> <li>※ 다만,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.</li> </ul>	<p>§62</p>
<p><b>선거일 후 답례금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후보자, 후보자의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이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·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전·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</li> <li>⇒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</li> </ul>	<p>§37</p>
<p><b>체육회의 임·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</li> <li>•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</li> <li>•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. 이하 이 표에서 같음)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</li> <li>⇒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</li> </ul>	<p>§31</p>

# II

##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개요 및 선거운동

### [개요]

- ▶ 선거일 : 2025. 1. 16.(목)
- ▶ 후보자 등록 : 2025. 1. 2.(목) ~ 3.(금)
- ▶ 선거운동기간 : 2025. 1. 4.(토) ~ 15.(수)
- ※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~ 선거일 전일까지 12일간 선거운동 가능

### [선거운동]

- ▶ 선거운동 가능자 : 후보자, 선거사무원 1인, 활동보조인 1인  
 ※ 장애인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1인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음.
- ▶ 선거운동 정의 :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
- ▶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
  -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·의사표시
  -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
  - 통상적인 업무행위
- ▶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

후보자	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선거공보</li> <li>· 전화[통화, 문자(음성·사진·화상·동영상 등 포함)]</li> <li>· 정보통신망[장애인체육회 개설 홈페이지, 전자우편(SNS, 카톡) 등]</li> <li>· 명함</li> <li>·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화[통화, 문자(음성·사진·화상·동영상 등 포함)]</li> <li>· 정보통신망[장애인체육회 개설 홈페이지, 전자우편(SNS, 카톡) 등]</li> <li>· 명함</li> </ul>

-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」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, 선거운동 주체도 ‘후보자’, ‘선거사무원’ 및 ‘활동보조인’으로 한정하고 있음
- 따라서,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,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‘후보자’, ‘선거사무원’ 및 ‘활동보조인’에 한하여 법과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

※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 관련 제한·금지 행위 3~4페이지 참조

## 1. 신고 포상금 지급

### ▶ 대한(장애인)체육회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고 1억원 지급

#### ☞ 포상금 지급사례

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금전살포 사실을 알게된 신고자에게 사건은폐 및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제공함.

◆ 신고자 포상금 1억원

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인 7명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“선거운동을 해달라”라는 부탁을 하면서 총 340만원의 현금을 제공함.

◆ 신고자 포상금 5천만원

## 2. 신고자 신원보호

### ▶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

### ▶ 포상금 지급 시 익명 처리,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상금 지급

## 3.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

### ▶ 금전·물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자는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

※ 제공받은 금전 또는 음식물·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
(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형사 처벌)

#### ☞ 과태료 부과사례

입후보예정자로부터 배 5상자(7.5kg, 1상자당 20,000원 상당)를 받은 선거인의 배우자

▶ 과태료 500만원

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인 5명

▶ 과태료 총 500만원(1명당 100만원)

## 위반행위 신고 070-5147-2425, 2428

※ 신고 시에는 가급적 증거자료(통화녹음, 음성녹음, 동영상 촬영물, 카톡·문자 등)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